

「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미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
(안 제1조~제3조)
-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민원실의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민원상담인의 위촉 및 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민원실의 설치)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(민원실)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(근무시간 등)

○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미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민원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